재직·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 가이드북

안녕하십니까?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 공개 · 심사,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익과 사익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재직공직자와 퇴직공직자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으니, 공직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재직 · 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 가이드북

한 눈에 보는 공직윤리 4

재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7

01 재산등록 및 공개 8
02 주식백지신탁 21
03 선물신고 27
04 부정청탁 · 알선 신고 30
05 취업청탁 제한 32

퇴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35

01 재산등록 및 공개 36
02 취업 제한 37
03 취업사실 신고 45
04 업무취급 제한 48
05 업무내역서 제출 54
06 부정한 청탁 · 알선 행위 금지 57

관련 서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59

직급별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61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업무관련 전화번호 63



한 눈에 보는 공직윤리

재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① 재산등록 및 공개

▶ 정무직 및 4급 이상(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을 등록해야 함

▶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장 등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

② 주식백지신탁

▶ 재산공개 대상자 및 기획재정부 금융 업무 관장 국 · 금융위원회 등의 4급 이상은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하여야 함

③ 선물신고

▶ 외국정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④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 알선 신고

▶ 퇴직공직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 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⑤ 취업청탁 제한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동안 처리한 업무 중 일정 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해서는 안 됨

퇴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① 재산등록 및 공개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재산공개 대상자에서 퇴직한 사람은 재산 신고사항을 공개

② 취업 제한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됨

▶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 가능

③ 취업사실 신고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④ 업무취급 제한

▶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취급할 수 없음

▶ 일부 공직자는 퇴직 전 근무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⑤ 업무내역서 제출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⑥ 부정청탁 · 알선 행위 금지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 알선을 해서는 안 됨

재직·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 가이드북

재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01 재산등록 및 공개
02 주식백지신탁
03 선물신고
04 부정청탁 · 알선 신고
05 취업청탁 제한



01 재산등록 및 공개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그 중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관보 · 공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재산등록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5조, 제6조

-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 검사, 대령 이상 장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경찰 · 소방 · 감사 · 조세 · 건축 · 토목 · 식품위생 · 회계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금융감독원 4급 이상, 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 원자력발전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은 재산등록 대상

- **대상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 · 동산 등의 모든 재산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출가한 女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대상이 아님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법 제12조제4항)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독립생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가 신청

※ 고지거부 허가는 3년간 유효

Q&A

Q 이혼한 배우자가 본인의 친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나요?

A 양육 주체와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Q 형제가 모두 신고의무자인 경우 부모 재산을 누가 신고하는가요?

A 모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제 중 실제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신고의무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얻는다면 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고) 대상 재산의 종류】

신 고 항 목	내 용
1 토지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면적, 공시지가 등)
2 건물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면적, 공시가격 등)
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 건설기계 등 소유권 및 저당권 등
4 현금	•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
5 예금 (보험, 양도성예금증서 등 포함)	•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
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
7 증권(주식 · 국채 · 공채 · 회사채 · 백지신탁 · 주식매수선택권 등)	•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은 재산총계에 비합산
8 채권 (사인간 채권)	•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
9 채무 (사인간 채무, 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
10 금 및 백금 (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소유자별로 500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
11 보석류	• 품목당 500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

신 고 항 목	내 용
⑫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
⑬ 회원권(골프 · 헬스 · 콘도)	• 회원권당 500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
⑭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재산총계에 비합산)
⑮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출자가액, 출자지분, 회사연간매출액
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출연재산, 보유직위(재산총계에 비합산)



Q 최초 신고(신규, 승진) 시 부동산 가액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Q 변동 신고(정기변동, 퇴직 증) 시 부동산 가액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Q 건물 임대 · 임차에 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A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타인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건물' 항목에 임차보증금을 '전세권'으로 신고하고,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은 '채무' 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합니다. 사글세(월세금)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Q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기존 건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분양계약서를 참고하여 신고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건물' 항목에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합니다.

Q 상가건물은 어떻게 가액을 산정하나요?

A 상가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상가 건물 중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이미 기준시가에 대지와 건물가액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시가를 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계좌 잔고가 1천만원이 안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개인별 예금(보험 포함)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개별 계좌의 잔고가 1천만원 미만이어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Q 가입한 보험이 만기 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자동차보험 등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 환급 후 자동 갱신되는 상품 등은 소멸성 보험이 아니므로 신고기준일 현재 납입한 금액을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Q 모임의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거나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사실상 본인 재산이 아닌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본인 명의 계좌는 다 신고하되, 해당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Q 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상장주식은 신고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 그 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합니다.

※ '18년 11월 현재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정안 통과 · 시행 시 별도의 산식 적용 예정

● **재산등록(신고) 종류 및 시기**

종류	등록대상	등록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등록내용
최초 신고	신규자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
	승진자			
변동 신고	정기변동	다음해 2월말까지	1.31.까지 ※ 재심사 : 2월 말까지	12.31. 기준 현재 재산 (매년 재산변동 사항)
	의무면제자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변동일 기준 현재 재산 (최종재산 등록 이후 변동사항)
	유예복귀자			
	재등록의무자			
	퇴직자			

※ 재산공개대상자는 변동신고시 주식거래내역 신고(해당 기간 중 주식 취득·양도 등 주식 거래가 있을 경우)

● **등록기관**

소속기관. 다만, 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인사혁신처

● **등록기간**

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는 다음해 2월말까지

● **등록방법**

의무자가 공인인증서(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 시스템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1522-4273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내용)** 재산등록 의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재산등록에 필요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조회·제공하여 의무자는 재산등록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음

✓ **(제공요청)** 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를 공직윤리시스템에 입력

✓ **동의서 제출시기**

– (수시신고) 등록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등록기준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 15일까지

– (정기변동 신고) 매년 11월 말까지



Q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는 해외 은행 예금이나 해외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금융 및 부동산 정보로 회신되지 않는 해외 재산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추가로 신고합니다.

Q 재산신고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재산신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대상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식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Q 재산신고서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 재산신고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며, 신고마감일 이후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등록(신고) 시 유의사항**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기준일을 확인하여 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신상 명세서 및 친족사항을 작성하고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

* 재산등록의무 발생 시점(신규채용일, 승진일, 전보일, 퇴직일, 정기변동신고 기준일(12.31.) 등)

–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 등에 대한 거주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

– 금융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제공되는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친목회비, 문중재산, 상속재산, 무허가 주택 등), 외국 소재 재산 및 사실상 타인 소유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신고

– 고지거부 허가 ·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불허가자의 소유 재산 신고

–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불필요한 소명 방지를 위해 등록한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비고(변동사유)'란에 상세하게 기재

– 타인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권(임차권)을 건물항목에 신고하고, 본인 등이 소유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채무(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채무 신고 대상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

※ 계좌별로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잦음

–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해당 지분만큼 신고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외의 보험을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이체되는 예금 및 마이너스통장(금융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최초 재산신고 방법】

작성순서	신고항목	주요신고내용
1 **본인정보 수정**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등록기준일 현재 상태로 작성
2 **친족정보 수정**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 등록기준일 현재 친족정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참고 ※ 직계존비속이 고지거부 대상이라도 우선 등록 후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최초신고 등록기준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딸, 사망한 직계존비속의 경우 등록하지 않음
3 **총괄표 작성**	–부동산(토지 · 건물)	▸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신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 평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활용 또는 부동산 소재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 타인건물의 임차권(전세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 임차보증금 기입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등 –광업권 · 어업권 및 부동산 규정 준용 권리	▸ 자동차는 가장 최근의 자동차보험 상 차량기준 가액을 기입 ※ 자동차보험증서 참고 ▸ 광업권 · 어업권 등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신고
	–예금 · 보험 · 증권, 사인 간 채권 · 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에, '–'이면 '채무'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소유 건물 (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
	–금 · 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보석 ·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 골프회원권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4 **공개목록 작성**	–등록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보에 공개되는 사항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 종류(주택, 아파트, 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 · 호수 기재 생략
5 **신고서 제출**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최종 확인 후 제출

【재산변동신고 방법】

작성순서	신 고 항 목	주 요 신 고 내 용
1 본인정보 수정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 상태로 수정
2 친족정보 수정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 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사망한 자나 결혼한 딸은 등록제외
3 총괄표 작성	–부동산(토지 · 건물)	▸ 매매 · 상속 ·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 · 합병 · 증축 · 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등 –광업권 · 어업권 등	▸ 자동차는 매매시 실거래가격,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기준가액 등으로 신고
	–현금	▸ 현금 · 자기앞수표 도합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예금 · 보험 · 증권 · 사인 간 채권 · 채무 등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 항목에,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 정치자금용 예금계좌의 예금을 보유하여 신고 시 해당 항목에만 신고하고 '예금' 항목에는 미신고
	–금 · 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매입 시 매입가격, 매도 시 매도가격으로 신고
	–보석 ·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 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면적 기재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등 신고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4 변동요약서 작성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 본인소득과 본인 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 기재
5 공개목록 작성	–재산공개자에 한함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 지목(주택, 아파트, 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 · 호수 기재 생략
6 신고서 제출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재산변동신고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재산공개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대상자**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기업의 장 · 부기관장 · 상임감사,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매 반기말 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공개 시기**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 내용**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및 변동사항 신고내용

- **공개 주체 및 방법**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 · 공보 등에 게재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 **공직선거후보자(법 제10조의2제1항)**

– **(대상)**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 **(제출내용)**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 재산을 후보자 등록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공개시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공고시

▶ **국회 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법 제10조의2제2항)**

– **(대상)** ①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 대법관 · 국회사무총장 등 그 임용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

② 헌법재판소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

– **(제출시기)**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시 국회에 제출

– **(제출기관)** 국회

– **(공개시기)**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공개

재산심사

- **재산심사의 내용**
  - **(등록사항 심사)** 등록재산의 거짓기재, 잘못 기재한 내역 및 중대 과실 여부, 금융재산의 성실 등록 여부 등
  - **(형성과정 심사)** 직무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 타법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 **심사기한**
  - **(공개대상자)**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 완료. 부득이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대상자)** 당해 연도 심사 완료 원칙
- **심사결과의 처리**
  - 심사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① 거짓으로 기재 ②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 ③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심사관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 의원, 시 · 도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앙선관위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 공무원
시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 도 및 시 ·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시 · 군 · 구의회 의원, 시 · 군 · 구 소속 4급 공무원
시 · 군 ·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 군 · 구 및 시 · 군 · 구 의회 소속5급 이하 공무원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 · 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 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재산등록 · 공개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주요 처분 사례】

■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 제8조의2, 법 30조제2항제2호) ※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군인 ·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 통보 가능. 조세 관련 법령은,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경고 ·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1호) • 재산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공개자)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2호) •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을 등록한 경우(법 제22조제6호) •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7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제2호)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4호, 제30조제2항제3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6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주요 처분 사례

• **총 3억원 이상 재산을 잘못 신고**

○○도의회 의원 ○○○은 사전에 신청하여 받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내역에 대한 사전 열람 없이 본인 및 친족의 재산 3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

➡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 **재산 전체 항목을 "변동없음"으로 신고**

○○부 서기관 ○○○은 잘못 신고한 금액이 경고처분 기준에 해당되나, 종전에 등록한 재산 내역과 전체 항목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여 한단계 가중사항 적용

➡ **"징계의결 요청"** 결정

• **전년도 심사 시 경고처분 받고 재차 잘못 신고**

○○시의회 의원 ○○○은 잘못 신고한 금액이 경고처분 기준에 해당되나, 전년도 심사시 경고처분 받은 후 재차 잘못 신고하여 한단계 가중사항 적용

➡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 **신고소득 대비 재산 과다 감소(분양권 누락)**

○○부 서기관 ○○○은 재산변동신고시 6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재산은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 심사 결과 본인 건물의 분양권을 누락한 것으로 3억원이 넘게 잘못 신고함

➡ **"징계의결 요청"** 결정

• **직무관련자와 사인간 채권 · 채무 형성**

○○시 주무관 ○○○은 재산변동신고시 사인간 채무 2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신고 하였는데, 심사 결과 3년전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채권자가 권유한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짐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의심 사례로 판단, **법무부에 조사의뢰**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 **자녀의 주소지 건물 임차권 미신고**

○○시 고위공무원 ○○○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중인 장남의 주소지 건물 임차권(전세가 1억2천만원, 의무자가 전세금 지원)을 미신고

➡ **"경고 및 시정조치"** 결정 및 세법 위반사항에 대해 **국세청 통보**

02 주식백지신탁

재산공개 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4조의5

- **대상자**

  재산공개 대상자(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등),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주식백지신탁 제도 적용 예외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 고시한 주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회사 주식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

✓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의무예탁기간 중)**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일명 스톡옵션)**

✓ **랩어카운트(증권사와 계약하여 운영중인 일임형 랩, 자문형 랩)**

※ 랩어카운트는 종목당 3천만원 초과시에만 대상주식으로 봄, 다만,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원 기준 적용

Q&A

Q 의무예탁기간은 지났지만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우리사주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적용 대상인가요?

A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면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대상이 되므로, 1개월 이내 처분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출자지분 등도 처분이나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

A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은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로서 공 · 사익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일임형 랩을 A, B, C 계좌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예-ㅇㅇ전자) 주식이 A계좌에 1천만원, B계좌에 1천만원, C계좌에 2천만원 있는 경우, 각 랩 계좌별로 3천만원 이하이므로 주식백지신탁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A 각 랩 계좌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같은 종목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Q 주가연계증권인 ELS나 지수연동형 펀드인 ETF 등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인가요?

A 해당 상품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이 아니며, 재산신고시에도 '예금'란에 신고합니다.

- **의무 발생일**
  -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
  -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후, 상속 · 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취득한 날

Q&A

Q 지방의회의원인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주식은 임기내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A 직무가 변경된 경우, 즉 상임위가 바뀌었거나 직위가 변경(일반 의원↔의장)되었다면 다시 심사청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보직 이동 등으로 직위가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이라도 다시 심사청구 등의 의무 이행 대상이 됩니다.

- **(조치사항)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조치사항 중 이행 필요**
  - **(매각 또는 백지신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록기관을 통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설치)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직위 변경)** 보유주식과 현재 직위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Q&A

Q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정확한 기간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월 5일에서 1개월 경과일은 3월 5일의 하루전인 3월 4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2월이 28일까지 있는 것은 상관없음). 만약,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의무이행 기한이 됩니다.

Q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 초과시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A 전부를 처분(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일부만 처분하여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주식을 3천만원 이하로 보유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Q&A

Q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을 2천만원 추가 매입하고 새로운 주식을 2천만원 신규 매입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직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관련성 없음" 결정 주식은 얼마든지 추가매입이 가능하며, 신규 매입 주식은 3천만원 미만이므로 심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Q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받은 주식을 매각했을 때에도 매각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은 자유롭게 추가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재산등록기관에 매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한 후 해당 주식을 매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매각으로 인해 보유 주식이 3천만원 이하가 되었다면 심사청구 철회요청(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Q 주식을 백지신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주식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백지신탁은 원칙적으로 수탁사가 60일 이내 수탁받은 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으로 바꾸어 운영하여야 하며, 신탁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일 이내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수탁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처분시한을 연장(1회 30일 이내, 횟수 제한은 없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시 다음 서류 제출**
  - **(매각 또는 백지신탁)** 주식 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 매각 · 백지신탁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상장주식의 경우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매각 · 백지신탁이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조치하였다면 지연사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도 함께 제출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주식백지신탁 적용 대상 제외, 매각 등으로 주식의 3천만원 이하 보유,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주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 철회 요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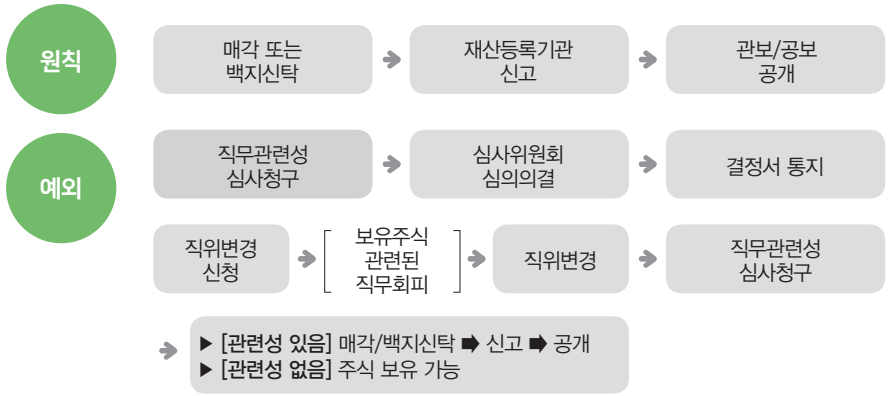
Q&A

Q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인 심사청구서와 함께 상장주식의 경우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무회피)** 다음의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관여 사실을 사후에 신고 및 공개
  -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해당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위원회는 관보 · 공보에 신고사항 공개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절차



【주식백지신탁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주요 사례】

■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10호) • 주식백지신탁 중 주식취득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11호) • 계약해지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법 제22조 제14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백지신탁 중인 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법 제22조제12호, 제28조의2제1항) • 백지신탁 중인 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여한 경우 (법 제22조제13호, 제28조의2제2항)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직무 관여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14의2호, 제30조제3항제1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요 처분 사례

•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후 8개월 이상 의무 미이행

○○대학교 총장 ○○○은 19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총장에 취임, 재산공개대상자가 됨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8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 직위가 변경되었음에도 1년 7개월 이상 의무 이행 지연

○○도의회 의원 ○○○은 문화관광위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건설'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을 결정 받았으며, 이후 상임위가 건설교통위로 변경되어 새로이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1년 7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03 선물신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대상자**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가족도 포함

- **대상선물**

  –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

  – 외국인(외국단체)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

- **조치사항**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 다만, 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기념품 수준 등)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고 불필요

  ※ 가액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 · 결정하므로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 후 조치

- **소속기관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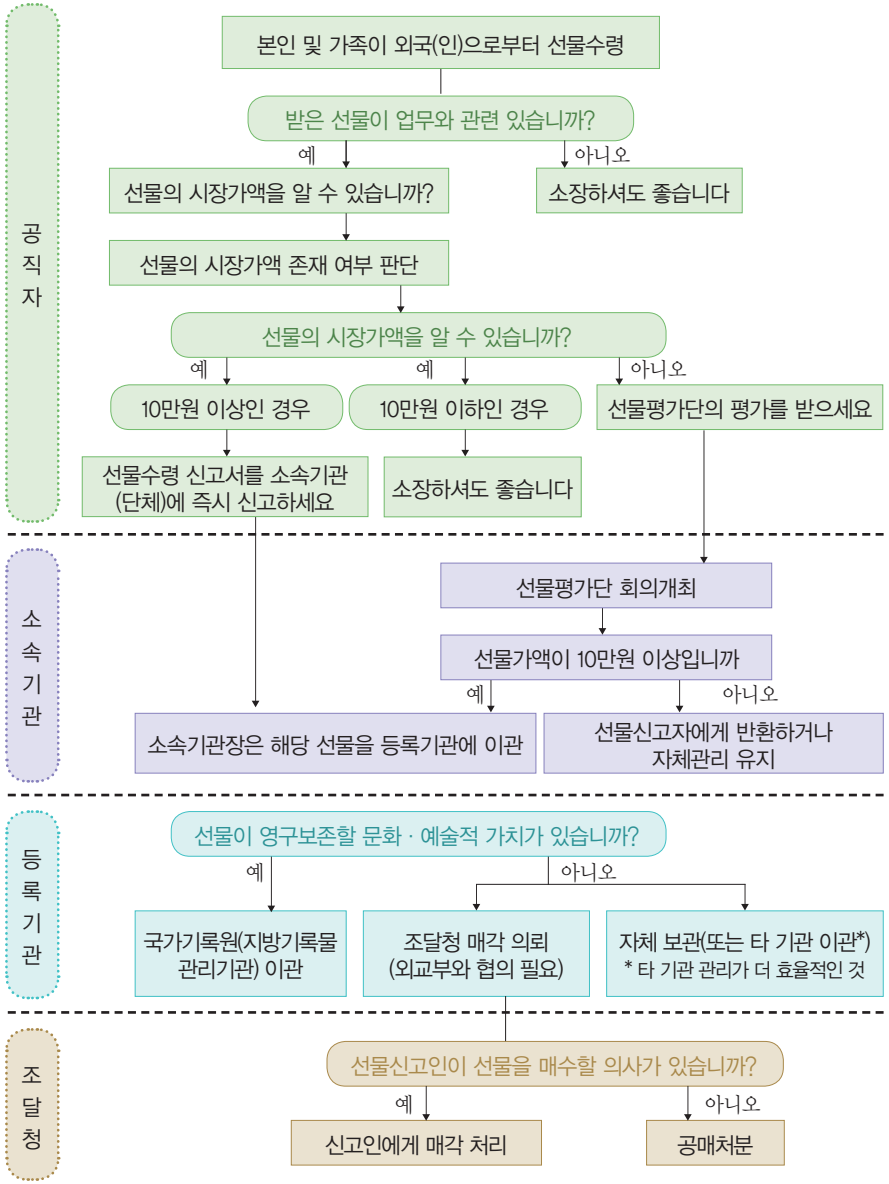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선물신고 접수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

  • 평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선물신고 접수

  • 평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 · 유지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Q&A

Q 직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외국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그 시상금(부상품)을 선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A 부상은 상품의 형태이든 상금과 같은 금전의 형태이든 공직자윤리법상의 '선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부패가 쉬운 음식물이나 생물을 선물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이를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소속기관 윤리담당자와 상의한 후 '선물평가단'에서 결정한 처리방안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Q 선물신고 대상이지만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A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라면 소속기관에 신고 및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이 소장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선물이 국유재산으로 관리 ·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하므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그런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수하는 방법으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선물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15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04 부정청탁·알선 신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
- **대상자**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 알선을 받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신고절차**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의6 서식에 신고자 및 청탁 ·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 알선을 한 일시 · 장소 · 내용 등을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단, 거짓신고한 경우 제외

Q&A

Q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는지요?

A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고, 신고로 인한 징계조치 등 어떤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도 금지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정청탁 · 알선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16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05 취업청탁 제한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일정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제1항
- **대상자**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 의무자)
- **제한 대상**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다음의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

제한 대상 일정 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 ✓ 직 · 간접의 보조금 · 장려금 · 조성금 등 배정 · 지급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생산방식 · 규격 · 경리 등에 대한 검사 ·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조세의 조사 · 부과 ·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 검사 ·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 : 매년 12월말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협회'는 '19. 6월부터 고시 예정)

- **취업제한기관 조회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법령 · 통계 정보 → 훈령/예규/고시 → 취업제한기관 고시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 검색창에 "취업제한" 입력
- **취업알선 금지(법 제18조의5제2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할 수 없음

【취업청탁 제한 의무 위반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법 제22조제17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소속기관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한 경우(법 제23조)	시정권고

재직·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 가이드북

퇴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01 재산등록 및 공개

02 취업 제한

03 취업사실 신고

04 업무취급 제한

05 업무내역서 제출

06 부정한 청탁 · 알선 행위 금지



01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등록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2항
- **대상자**
  재산등록 의무자(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에서 퇴직한 사람
- **신고 내용**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 사항
- **신고 기간**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 갈음
  ※ 등록대상 재산, 고지거부, 금융정보 제공 동의, 위반시 제재 등은 재직자 재산등록과 동일

재산공개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대상자**
  재산공개 대상자(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12호)에서 퇴직한 사람
- **공개 시기**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02 취업 제한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대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Q 5급에서 4급으로 명예퇴직하였는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5급에서 명예퇴직하는 경우 인사발령상 퇴직직급은 4급으로 기재되나, 공무원 신분은 퇴직일 전날 24:00까지만 유지되고 그 때는 5급이므로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업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Q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여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었으나, 재산등록 기간인 2개월 이내 퇴직하여 재산등록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A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 발생 후 2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재산등록(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취업심사대상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산등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 면제일(퇴직일)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Q 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서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지요?

A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의 의무면제자는 1차 의무면제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인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Q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가 미리 취업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에서 퇴직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재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의 작성방법에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등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로 볼 때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A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8호의4 서식(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과 별지제19호 서식(취업승인신청서)의 작성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예정자'의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해 전역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군인만 해당됩니다.

Q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 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비위면직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과 중복 적용됩니다.

- **제한 대상인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 ·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 ·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 봉급을 받는 경우



Q 취업제한기관인 영리 사기업체의 비상임이사 위촉시에도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위나 직책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 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 임금 · 봉급 등을 받는 경우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취업제한기관에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어도 취업심사 대상입니다.

- **제한 기간**

  퇴직일로부터 3년간

- **제한 기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구 분	기관 업무 기준	부서 업무 기준
대 상	• 2급 이상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원(특정기관 1급 포함)	• 3급 이하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직원
관련성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각호의 업무 – 재정지원, 인 · 허가, 검사 · 감사, 조세의 조사 · 부과 · 징수, 계약 · 검사 · 검수,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 심리 · 심판,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등	

- **제한 기관**

구 분		기 준
영리 분야	영리 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협회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 가입

구 분		기 준
비영리 분야	시장형 공기업	기획재정부 지정 · 고시
	공직유관단체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
	사립대학 등	사립대학과 그 설립 학교법인
	종합병원 등	종합병원과 그 설립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 취업제한기관 : 매년 12월말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협회'는 '19. 6월부터 고시 예정)

- **취업제한기관 조회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법령 · 통계 정보 → 훈령/예규/고시 → 취업제한기관 고시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 검색창에 "취업제한" 입력



Q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는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A 아닙니다. 취업심사 대상인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3급 이하 공무원 등 적용) 또는 기관(2급 이상 공무원 등 적용)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설명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이라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Q 사립대학도 취업대상기관에 해당되는데 순수학문 연구를 위해 평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사립대학의 교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직위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민관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등의 직위(소위 보직교수)에 있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 학문적 전문성을 살려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취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심사 없이 취업하였으나, 1년 경과 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취업심사는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업체가 향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더라도 별도로 취업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한 업체가 연도 중 회사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사업분야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거나 합병된 경우 취업제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A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자본금, 외형거래액)를 충족하고 있다면 취업제한대상에 해당됩니다.

- **취업심사 종류**

※ 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 승인' 신청 중 택일하여 요청(신청)

구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 승인
개념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조사 · 판단하여 취업가능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
요건	• 재정보조 제공 •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등에 관계 • 생산방식 · 규격 · 경리 등에 대한 검사 · 감사 관련 • 조세의 조사 · 부과 · 징수에 관계 • 공사 · 용역 · 물품구입의 계약 · 검사 · 검수 관련 • 법령에 근거한 직접 감독 • 취업제한기관에 관계되는 사건의 수사 · 심리 · 심판과 관계 등 •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 국가안보 · 대외경쟁력 강화 · 공공이익상 필요 • 직제 · 정원의 개정 · 폐지, 직위 폐지 · 정원 초과로 인한 면직 • 국가 · 지자체 출자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상 필요 • 기술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산업 분야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 • 일정기간 전문지식 · 기술 필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 등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

Q&A

Q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신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또는 취업승인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취업예정업체(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 **관련 절차**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보완 · 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각각 통지

우선취업 제도

- **(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4**
- **(내용)**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고 취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먼저 취업을 하게 한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는 추후에 실시
- **(사유)** ⅰ)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ⅱ)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ⅲ) 기타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 **(신청)**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 서식의 신청서 기재,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

  ※ 대상자가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가능
- **(승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전 우선취업 승인 가능

여기서 잠깐!!

◆ **(임의취업)**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없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임의취업) 했는지 여부를 연 2회 확인** ⇒ 적발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 **(심사시기)**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관할 윤리위 판단을 받아야 함



【취업제한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주요 사례】

■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법 제29조제1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2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요 사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의 임의취업

1) 前 ○○○부 ○○○서기관은 취업제한기관인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인 ○○○협회에 취업하면서 사전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

➡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및 취업해제 조치"** / 사전 취업심사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2) 前 공직유관단체 ○○○원장은 취업제한기관인 (주)○○○에 사외이사로 취업하면서 사전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

➡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및 취업해제 조치"** / 사전 취업심사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 업무관련성이 낮은 취업제한기관에의 임의취업

1) 前 공직유관단체 대표 ○○○은 취업제한기관인 ○○○○에 비상임 고문으로 취업 하면서 사전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

➡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가능"** / 사전 취업심사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2) 前 공직유관단체 임원 ○○○은 취업제한기관인 (주)○○○에 감사실장으로 취업 하면서 사전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

➡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가능"** / 사전 취업심사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03 취업사실 신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

- **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 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 등

- **신고 대상**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

- **신고 시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취업사실 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제출

  * 대상자 인적사항, 퇴직일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 직위,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 직위 · 취업일 · 취업경로 등 기재

  –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신고 가능

취업이력 공시 제도

- ✓ **(목적)**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 유도
- ✓ **(내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에 공시
-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 ✓ **(대상)**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 **(방법)**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공시
- ✓ **(항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 직급 등과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등

Q&A

Q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0년간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동 기간 동안 취업이력이 공시됩니다. 그 대상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인 고위공직자와 동일합니다. 즉, 재산공개 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원 등이 취업사실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취업사실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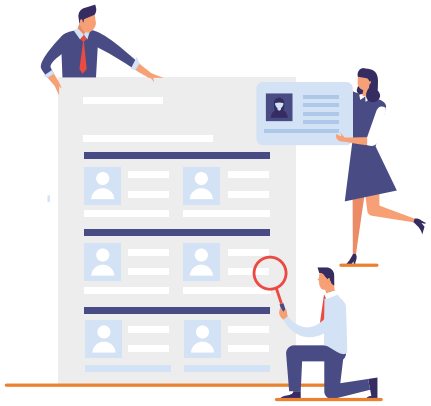
위반 내용	제재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5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요 사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사실 미신고

1.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은 취업제한기관인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부회장으로 취업한 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
2.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 퇴직한 ○○○은 취업제한기관인 사기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한 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

➡ 취업사실 신고 위반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04 업무취급 제한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 시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중에서 일정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해당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 업무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 처리업무 취급 제한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 **대상자**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제한대상 업무**
  재직한 전체 기간에 직접 처리하였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한 대상 일정 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 ✓ 직 · 간접의 보조금 · 장려금 · 조성금 등 배정 · 지급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 인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생산방식 · 규격 · 경리 등에 대한 검사 ·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조세의 조사 · 부과 ·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 검사 ·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 **제한기간**
  영구(기간 제한 없음)

Q&A

Q 모든 공직자가 재직한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전부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A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취급금지의 대상이고,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만 해당됩니다.

Q '본인 처리업무 취급 제한'은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와 취업심사가 필요 없는 곳에 취업한 경우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

A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의한 본인 처리업무 취급 제한은 취업제한기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라면 취업제한기관인지 여부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해당 업무의 취급이 금지됩니다.

Q 어떤 경우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의 적용을 받아 업무취급이 금지되는 것인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A 예를 들어, 재직 중 A업체에 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퇴직 후 A업체에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재직 중 직접 처리내역과 취업 후 취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관 처리업무 취급 제한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 **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 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 등

- **제한대상 업무**

  해당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 재정보조, 인 · 허가, 검사 ·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제한기간**

  퇴직 후 2년간

Q&A

Q ○○청의 소속기관장(예, △△지방청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기관 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 이외에 상급 중앙행정기관이 처리한 업무의 취급도 금지되는지요?

A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해당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므로, 해당자가 퇴직할 때까지 △△지방청에만 2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하급기관 포함)이 해당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 2년간 취급이 제한됩니다.

업무취급 승인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 **대상자**

  업무취급 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

- **승인사유**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 취급이 필요할 것

  ✔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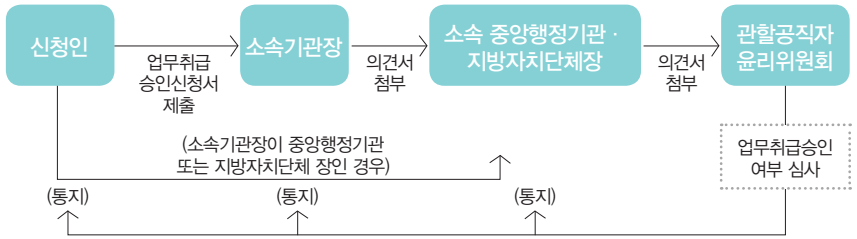
  ※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승인신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및 취업예정 확인서*(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출

  * 취업한 상태라면 취업사실 증빙서류

〈승인 절차〉



Q&A

Q 업무취급 승인 신청은 취업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인지요?

A 업무취급 승인은 취업한 후 제한업무의 취급이 필요한 때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면 되므로, 취업심사처럼 취업 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취급 승인을 취업심사와 함께 받게 되면 취업 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업무취급 제한 위반(제재 : 과태료 또는 벌금 · 징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 제한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주요 사례】

■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취급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법 제29조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취급제한 대상 업무를 취급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요 사례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취급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前 공무원 ○○○은 재직 중 본인이 총괄 · 처리했던 계약 등 업무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업제한기관은 아니지만 해당 업무와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자문역 간부로 취임한 후, 해당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1항 업무취급제한 위반에 해당 한다"라고 결정하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업무취급 위반" 고발**

기초자치단체 前 국장급 공무원 ○○○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본인이 재직 중 총괄 · 관리하던 사업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업제한기관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회사에 취업한 후 해당 업무를 취급하였다"는 의혹을 받음

➡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였고, 관할 공윤위와 지자체 감사부서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으며, **해당 퇴직공무원은 자진 퇴사**하였음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취급제한 대상 업무를 취급한 경우

중앙부처 前 고위공무원 ○○○은 취업제한기관인 ○○○○에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개월간 기관운영을 총괄하면서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정보조 및 감독 · 감사 업무(제17조제2항 제1호, 제6호)를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은 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 위반으로 제3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 된다"라고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취급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사례

중앙부처 前 고위공무원 ○○○은 취업제한기관인 ○○○○에 상근부회장으로 취임 후 부기관장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업무위탁 · 협약 업무, 용역 계약 업무, 감독 · 감사 업무 등에 대하여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을 신청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의 공공성은 일부 인정되나, 신청인의 직접 취급 필요성이 크지 않고 업무취급의 시급성 및 공익 관련성이 크지 않으며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업무의 취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업무취급 불승인" 통지**



05 업무내역서 제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 **대상자**
  법 제18조의2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제출시기**
  퇴직 후 2년간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처**
  퇴직 전 소속기관장
- **업무내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 서식) 기재사항**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관여한 업무처리 등 월별 활동내역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 등을 포함
  – 퇴직 전 소속기관과 문서수발내역 등 증명서류 및 세부설명자료 등 첨부
- **관련 절차**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소속기관장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내역서 제출 (퇴직 후 매 1년 1개월 이내)		의견서 첨부		의견서 첨부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위반여부 확인

Q&A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취업제한기관 이외의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기관 처리업무 취급 제한 대상인지?

A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기관 처리업무 취급 제한을 받고, 이 경우에 한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 작성 시 퇴직 후 2년 동안 2개 이상의 취업제한기관에서 근무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퇴직 후 2년간 소속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제한이 목적이므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매 1년이 지난 1개월 이내 취업한 모든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위반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3호)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부과(병과 가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요 사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을 받고 공공기관장으로 취임한 후, 취업기관에서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중앙부처 前 고위공무원 ○○○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에서 재취업한 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취급제한업무(제17조제2항 제3호, 제6호)를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이 처리한 사실이 업무내역서 심사과정에서 확인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위반으로 결정하고,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



06 부정한 청탁 · 알선 행위 금지

모든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1항
- **대상자**
  퇴직한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금지 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참고)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제5조제1항)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됨

- ✓ 인가 · 허가 · 면허 · 승인 · 검사 등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공공기관 주관의 수상, 포상, 우수자 전발 등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입찰 · 경매 · 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등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보조금 · 장려금 · 기금 등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에 배정 · 지원하거나 투자 · 예치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등

【부정 청탁 · 알선 행위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3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 서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재산등록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재산변동 요약서
별지 제3호의2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의3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서
별지 제3호의5서식	주식변동사항 신고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재산등록 보완신고서
별지 제5호의4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서

■ 주식백지신탁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
별지 제14호의5서식	주식(매각 ·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 · 운용 중인 주식)
별지 제14호의8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별지 제14호의15서식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별지 제14호의17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별지 제14호의18서식	직위변경 신청서

■ 선물신고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

■ 취업제한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18호의3서식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취업 예정 확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우선취업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승인신청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취업사실 신고서

■ 업무취급제한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20호의2서식	업무취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업무내역서

■ 부정청탁 · 알선 신고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20호의6서식	청탁 · 알선행위 신고서

직급별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재직자

대상자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 알선시 신고(30p)
2~4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상근 임원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8p) •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 알선시 신고(30p) •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경찰 · 소방 · 감사 · 조세 · 건축 · 회계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 원자력발전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8p) •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 알선시 신고(30p) •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기획재정부 금융 사무국 및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8p) •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각 ·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21p) •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 알선시 신고(30p) •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 및 재산등록사항 공개(8p) ※ 변동신고시 대상 기간 중 주식 거래가 있었을 경우 주식거래 내역 신고 •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각 ·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21p) •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 알선시 신고(30p) •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 퇴직자

대상자(퇴직 전 직급)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 알선 금지(57p)
3~4급 공무원, 경찰 · 소방 · 감사 · 조세 · 건축 · 회계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 금융감독원 및 원자력발전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	•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36p) •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제한(37p) •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 알선 금지(57p)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 금융감독원 및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1급 이상 직원	•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36p) •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제한(37p) •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45p) •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 취급 불가(49p)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시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54p)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 알선 금지(57p)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 및 재산신고사항 공개(36p) •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제한(37p) •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45p) •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 취급 불가(49p)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시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54p)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 알선 금지(57p)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업무관련 전화번호

분 야	부 서	전화번호
재산등록 · 공개	재산심사과	044-201-8482
주식백지신탁	윤리정책과	044-201-8456
선물신고	윤리정책과	044-201-8457
취업제한	취업심사과	044-201-8475
업무취급 제한	취업심사과	044-201-8480
부정청탁 · 알선 금지	취업심사과	044-201-8480

관련 사이트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신고 및 공직윤리제도 관련 자료 · 서식 게재 등

서비스데스크 **1522-4273**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직윤리제도 소개,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제한기관 지정현황 게재 등

재직·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 가이드북

발행일 2018년 12월 7일
발행처 인사혁신처
디자인 · 제작 중앙인쇄 T. 02)736-2866~7